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영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6. 10. .

제 출 자: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1. 제안이유

영종구 주민들의 교통수요 충족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공영버스 사업에 대해 경험이 풍부하고 인력, 차량관리 등의 인적자원을 기 확보하고 있는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공영버스 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2027. 1. 1 ~ 2029. 12. 31 (3년)

※ 2026년도 하반기 민간위탁업체 공개 모집 실시

나. 운영방법 : 공영버스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른 위탁업체 선정

다. 운영대상 : 14개 노선 19대 (2026. 9월 기준)

※ 향후 차량 증차 및 노선 개편 등에 따라 운영 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
라. 수탁자 자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내버스) 면허를 취득한 자
- 영종구 지역에 전용 차고지(필요 면적 이상) 확보가 가능한 자
- (우대조건) 공영 전기버스 정상 운행에 필요한 충전시설을 설치·운영 가능한 자

3.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제8조
-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1511호)
- 「대중교통 소외지역 셔틀버스 운행지침」 (市 대중교통과-8234(2007. 7.24))
-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제6조

영종구 공영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공영버스를 운영하여 영종국제도시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 ❖ 영종구의회 보고를 통해 민간위탁 사무 여부를 정하고 해당 사업에 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위탁업체로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1 근거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제8조
-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1511호)
- 「대중교통 소외지역 셔틀버스 운행지침」 (市 대중교통과-8234(2007. 7.24))
-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및 제6조

2 민간위탁의 필요성

- 공영버스는 영종구 관내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권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 안정적인 공영버스의 운행과 운영의 효율성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전문적인 버스운수회사의 운영·관리가 필요함.
- 따라서 해당사업에 경험이 풍부하고 관련 자원(인력, 차량관리 등)을 기 확보하고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사업완수 및 효율적인 운영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3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7. 1. 1 ~ 2029. 12. 31 (3년)
※ 2026년 하반기 민간위탁업체 공개 모집 실시
- 위탁사무 및 범위
 - 가. 버스의 노선 운행에 관한 사항
 - 나. 버스의 유지관리 및 승객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다. 운수종사자 채용 및 관리

라. 승객의 안전한 수송

마. 기타 차량 운행에 필요한 사항

○ 선정방법 : 공영버스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른 위탁업체 선정

○ 운영대상 : 14개 노선 19대 (2026. 10월 기준)

※ 향후 차량 증차 및 노선 개편 등에 따라 운영 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

○ 비 고 : 「영종구 대중교통 체계 개선대책 수립용역」 결과에 따라 운행 방식(ex) 수요 응답형 교통체계 추진 등) 변경이 있을 수 있음.

4 수탁자 자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시내버스) 면허를 취득한 자

○ 영종구 내에 보유버스 운행에 필요한 기준면적 이상의 차고지를 확보하였거나, 위탁개시일 전까지 확보할 수 있음을 객관적인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자

○ (우대조건) 공영 전기버스 정상 운행에 필요한 충전시설을 설치·운영이 가능한 자

5 위탁자 선정

○ 공개모집 후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에 따라 영종구 공영버스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붙임] 운행노선 현황 (2026. 8. 31. 개편 기준)

노선	기점	주요경유지	종점	첫차 시간	막차 시간	운행 간격 (분)	운행 시간 (분)	운행 거리 (km)	운행 대수 (대)	운행 횟수 (회)
1	KT인천 공항지사 (영종중)	운서역~첫개마을~장춘빌라~ 해송노인요양병원~ 예단포물양장~박촌마을입구~	영종역	06:50 (상행) 07:25 (하행)	22:50 (상행) 22:05 (하행)	80 (식 130)	70 (90)	26 (31.4)	1	10.5
2 (평일통학)	영종중	LH7~한양수자인~ 우미린1단지정문~ 영종하늘체육공원~	동원 로얄	15:25	15:35	5	30	6	3	3
3	힐스 테이트	하늘초교후문~돌팍재삼거리~ 서당골~마장포~논골~ 영종역~동강리~전소~ 영종복합문화센터~	영종중	06:08 (상행) 05:00 (하행)	22:30 (상행) 22:30 (하행)	36 (식 92)	129	34	4	29.5
5	영종역	잔다리삼거리~돌팍재삼거리~ 중산중고~하늘도시~ 영종복합문화센터~LH1단지~ 영종고~운서중~운서역	하늘 문화센터	06:40 (상행) 06:20 (하행)	21:50 (상행) 21:55 (하행)	45 (식 80)	165	45	4	22
5-2 (평일심야)	영종역	운남교차로~전소~ 영종물류고등학교~	영종복합 문화센터	00:00	00:35	40	15	4.5	1	2
5-5 (평일통근)	영종국제 병원	e편한세상오션하임 영종2동행정복지센터 영종LH67단지	영종역	06:20	08:40	50~60	50~ 60	12.4	1	3
5-6 (평일통학)	운서중	운서2차SK뷰~ 영종복합문화센터~ LH7단지~한라비발디	하늘초	15:25	-	-	40	12	1	1
6	광명항 (샘구미)	광명항~무의도주민자치센터~ 큰무리선착장~거잠포선착장~ 인천대교 경유	동인천 우리은행	(광명항) 08:10 (동인천) 09:30 11:10 12:30 14:40 16:00		180 (식 210)	140	82	1	3
6-1	전소	영종중~은골사거리~ 을왕리해수욕장~ 용유역~큰무리선착장	하나개 해수욕장	07:00 (상행) 08:30 (하행)	20:20 (상행) 21:50 (하행)	180 (식 220)	170	71.1	1	5
7	KT인천 공항지사 (영종고)	운서역~인스파이어~ 왕산해수욕장~늘목~ 용유동행정복지센터~ 용유초(나룻개방면)	용유초 (서릿목 방면)	06:30 (상행) 07:30 (하행)	20:30 (상행) 21:30 (하행)	105 (식 175)	105	51.2	1	7
8	운서역	인천공항(T1)~용유역~ 용유초~늘목마을입구~ 을왕리해수욕장	왕산 차고지	06:30 (상행) 07:45 (하행)	21:40 (상행) 21:45 (하행)	135 (식 200)	130	62	1	6
8-1	영종구청 (동편) (하늘도시 중심상가)	영종복합문화센터~ 무의도입구~마시란해변~ 을왕리해수욕장~	왕산 차고지	06:30 (상행) 07:30 (하행)	20:40 (상행) 21:40 (하행)	125 (식175)	115	50	1	7
9	예단포 물양장	장춘마을~백운마을~영종역~ 중산동(중촌)~전소~물류고	영종복합 문화센터	06:47 (상행) 06:10 (하행)	21:50 (상행) 22:24 (하행)	89 (식 134)	79	22.6	1	10.5
10 (평일운행)	동보 노빌리티	우미2단지~E편한.센트럴~ KCC스위첸~운남교차로~	영종역	06:20 (상행) 06:45 (하행)	22:00 (상행) 22:20 (하행)	25 (식 50)	50	12	2	29

관계 법령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

[시행 2026. 7. 1.] [인천광역시영종구조례 제217호, 2026. 7. 1., 제정]

제8조(관리의 위탁) ① 구청장은 공영버스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격을 갖춘 시내버스운송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

[시행 2022. 2. 11.] [국토교통부훈령 제1511호, 2022. 2. 11., 일부개정]

제3조(사업대상의 결정) 사업대상은 사업주관기관이 정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이용객이 적어 운행결손이 심하여 기존의 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운행중이거나 운행예정인 명령 노선을 포함한다)
2. 대체교통수단이 없어 운행이 중단될 경우 주민의 경제활동 또는 학생의 통학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노선
3. 기타 사업주관기관이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노선

제4조(운영주체) ① 공영버스의 운영은 사업주관기관이 직영하는 것으로 하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단위조합장, 기존의 버스운송사업자 또는 당해 지역주민 단체등을 운영주체로 할 수 있다.

② 사업주관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영기관외의 자를 운영주체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주관기관과 운영주체 간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계약기간·운행시간 및 운행회수·운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협약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시행 2026. 7. 1.] [인천광역시영종구조례 제4호, 2026. 7. 1., 제정]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사무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 각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8. 그 밖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이하

제출부서 : 대중교통과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방역 등 연간 반복적 사무
3. 연간 위탁금액 5천만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

④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 내용
4. 민간위탁 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관련조문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제8조 (관리의 위탁)
-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셔틀버스 운행지침」
-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 비용발생요인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영버스 운영 지원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위탁운영대상: 공영버스 14개 노선, 19대
- 운영 목적 : 대중교통 접근이 불편한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 비용 산정방법
 - 인건비 : 최저시급 인상률 및 물가변동 등을 반영하여 임금 협상을 통하여 결정
 - 공영버스 운영비에 필요한 유류비, 수리비, 통행료, 실비 지급

나. 추계 결과(2026년 소요예산 추계)

(단위 : 천원)

구분	소요예산	주요내용
인건비	2,100,000	- 기본급, 제수당, 4대보험 비용 (3,500천원 × 50명 × 12월)
유류비	606,896	- 공영버스 19대 유류비 (28,097 × 1,800원 × 12월)
수리비	186,000	- 공영버스 19대 수리비 (15,500천원 × 12월)
통행료	20,500	- 공영버스 톨게이트 통과 비용 (9.4천원 × 2,190회 (365일 × 1일 6회))
기타 (관리비 등)	32,400	- 교통카드정산관리비, 수도권환승수수료 등 (2,700천원 × 12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47,062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위탁수수료	209,500	운영비의 7%
합계	3,202,358	

다. 재원조달 방안 : 시비 50%, 구비 50%

3.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계
세 입		2,141,179	2,350,895	2,421,422	2,494,065	2,568,887	11,976,448
세 출		3,202,358	3,531,310	3,637,249	3,746,367	3,858,758	17,976,042
인건비		2,100,000	2,246,400	2,313,792	2,383,206	2,454,702	11,498,100
유류비		606,896	718,080	739,622	761,811	784,665	3,611,074
수리비		186,000	240,000	247,200	254,616	262,254	1,190,070
톨비		20,500	7,665	7,895	8,132	8,376	52,568
기타 (관리비 등)		32,400	34,800	35,844	36,919	38,027	177,990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47,062	53,345	54,945	56,594	58,292	270,238
위탁수수료		209,500	231,020	237,951	245,089	252,442	1,176,002
재원 조달		3,202,358	3,531,310	3,637,249	3,746,367	3,858,758	17,976,042
의존 재원	소 계	1,601,179	1,765,655	1,818,625	1,873,184	1,929,379	8,988,022
	보조금	1,601,179	1,765,655	1,818,625	1,873,184	1,929,379	8,988,022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1,601,179	1,765,655	1,818,624	1,873,183	1,929,379	8,988,020
	자체재원	1,061,179	1,180,415	1,215,827	1,252,302	1,289,871	5,999,594
	세외수입	540,000	585,240	602,797	620,881	639,508	2,988,426

※ 연도별 3% 인상률(예상) 적용

4. 부대의견

- 공무원 봉급 임금인상률에 따른 인건비 변동, 유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및 운영비 변동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인상률 3% 적용하였음

작성자 : 건설안전교통국 대중교통과 이 미 현